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좌간 목표잔액 관리약정서 (복수법인용)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

대리회사 겸 참여회사 본 인 _____ (인)
 주 소

인감대조

참여회사 본 인 _____ (인)
 주 소

인감대조

참여회사 본 인 _____ (인)
 주 소

인감대조

참여회사 본 인 _____ (인)
 주 소

인감대조

본인(이하 “회사”)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과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좌간 목표잔액 관리서비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문맥에 따라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가용잔액”	은행의 기록에 따라 해당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회사가 인출할 수 있는 계좌 잔액을 의미한다.
“계좌”	회사 명의로 은행에 개설된 자계좌, 모계좌, 또는 최종모계좌를 의미한다.
“계좌구조”	첨부 1 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이 약정 관련 계좌 전체의 구조를 의미하며, 계좌구조는 이 약정의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계좌간 목표잔액관리”	문맥에 따라 단방향 계좌간 목표잔액관리, 양방향 계좌간 목표잔액관리, 여유자금 이체관리 및 부족자금 이체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계좌통지”	첨부 3 의 계좌통지 양식에 의한 계좌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한 통지를 의미한다.
“관리서비스”	이 약정에 명시된 계좌간 목표잔액 관리서비스를 의미한다.
“담보권”	특정인을 위한 저당권, 질권을 비롯하여 담보 목적의 권리 이전, 권리보유 기타 모든 담보권을 의미한다.
“마감잔액(기산일 기준)”	영업일 영업 종료 후 각 거래의 입출금 정리를 끝낸 계좌의 잔액을 의미한다.
“모계좌”	이 약정의 체결시에 모계좌로 지정된 계좌 또는 계좌통지에 따라 모계좌로 지정된 계좌를 의미한다.
“목표잔액”	이체일에 관리서비스에 의한 계좌간 자금 이체 후 자계좌에 남아 있도록 예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부족자금”	자계좌의 가용잔액 또는 마감잔액(기산일 기준)이 부(-)의 금액

인 경우, 해당 금액을 의미한다.

“불가항력”

환전 또는 이체에 대한 법적 제약, 징발, 화재, 폭발, 천재지변, 외부파업, 폭동, 반란, 전쟁, 정부 혹은 관련 기관조치 등 관련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건을 의미한다.

“서비스실행 주기”

관리서비스에 의한 이체실행 주기로서 회사가 제 2 조에서 선택한 기간을 의미한다.

“여유자금”

자계좌의 가용잔액 또는 마감잔액(기산일 기준)이 정(+)의 금액인 경우, 해당 금액을 의미한다.

“영업일”

자계좌 및 모계좌가 소재한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영업 종료”

각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영업일의 모든 거래 처리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체일”

- (i) 일별 계좌간 목표잔액관리의 경우, 각 영업일,
- (ii) 주별 계좌간 목표잔액관리의 경우, 회사가 제 2 조에서 지정한 매주의 동일한 요일 (해당 이체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이체일의 전 영업일, 다만 그 날이 해당 월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이체일의 다음 영업일)
- (iii) 월별 계좌간 목표잔액관리의 경우, 회사가 제 2 조에서 지정한 매월의 동일한 날 (해당 이체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이체일의 전 영업일, 다만 그 날이 해당 월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이체일의 다음 영업일)

“자(子)계좌”

이 약정의 체결시에 자계좌로 지정된 계좌 또는 계좌통지에 따라 자계좌로 지정된 계좌를 의미한다.

“최종 모계좌”

상위에 모계좌가 없는 최종 모계좌로서 이 약정 체결시에 최종 모계좌로 지정되거나 계좌통지에 따라 최종 모계좌로 지정된 모계좌를 의미한다.

제 2 조 관리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다음에서 선택한 계좌간 목표관리에 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은행에게 회사를 대리하여 이 약정에 따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출금, 이체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다.
 (회사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

		선택사항
서비스실행 주기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매주 (__요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__일)	
서비스내용	<input type="checkbox"/> 단방향 계좌간 목표잔액관리	은행이 위 서비스실행 주기에 따라 해당 이체일의 영업종료시에 다음과 같이 계좌간 이체를 실시하는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자계좌의 마감잔액(기산일 기준)이 목표잔액보다 큰 경우, 은행은 자계좌의 마감잔액과 목표잔액의 차액을 해당 자계좌로부터 지정된 모(母)계좌로 이체. <input type="checkbox"/> 자계좌의 가용잔액이 목표잔액보다 큰 경우, 은행은 자계좌의 가용잔액과 목표잔액의 차액을 해당 자계좌로부터 지정된 모(母)계좌로 이체. <input type="checkbox"/> 자계좌의 마감잔액(기산일 기준)이 목표잔액보다 작은 경우, 은행은 목표잔액과 자계좌의 마감잔액의 차액을 지정된 모계좌로부터 해당 자계좌로 이체. <input type="checkbox"/> 자계좌의 가용잔액이 목표잔액보다 작은 경우, 은행은 목표잔액과 자계좌의 가용잔액의 차액을 지정된 모계좌로부터 해당 자계좌로 이체.

	□ 양방향 계좌간 목표잔액관리	은행이 단방향 계좌간 목표잔액 관리에 따라 자계좌 관련 이체 실행을 하고, 그 이체일의 다음 영업일 첫거래로 해당 이체일의 이체금액을 기존 거래와 반대로 역이체하는 서비스. (다만, 월별 계좌간 목표잔액관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최소 이체금액을 설정할 수 없음)
--	------------------	--

제 3 조 계좌 구조

- ① 자계좌는 반드시 모계좌를 가져야 한다.
- ② 모계좌는 상위에 또 다른 모계좌를 가질 수 있고, 하위의 모계좌는 상위의 모계좌와의 관계에서는 자계좌가 된다.
- ③ 모계좌의 상위에 별도의 모계좌가 없는 경우 해당 모계좌는 최종 모계좌가 된다.
- ④ 자계좌, 모계좌 및 최종 모계좌의 관계는 첨부 1 계좌구조도와 같다.
- ⑤ 회사는 첨부 2 계좌지정표에 기재된 계좌들을 관리서비스 대상 자계좌 및 모계좌로 지정한다.

제 4 조 대리회사의 권한 등

- ① 대리회사는 각 참여회사를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1. 은행에 대한 관리서비스에 포함될 계좌의 통지
 - 2. 제 5 조에 의한 계좌통지, 제 6 조에 의한 이자계산 요청 및 제 8 조에 의한 이 약정의 해지통지
 - 3. 이 약정상 통지서 및 기타 교환 문서의 수령
 - 4. 은행과 대리회사 간에 합의된 제반 비용 및 수수료의 지급
 - 5. 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좌간 지급이자, 계좌별 수익 또는 비용 등의 계산
- ② 참여회사가 제 5 조 제 4 항에 따라 은행에게 대리회사에 대한 권한부여의 철회를 통지하고 동항에서 정한 통지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대리회사에게 이 약정에 따른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은행의 행위는 유효하다. 그러한 통지기간 만료 후에는 은행은 관련된 참여회사 또는 적법하게 선임된 후임 대리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다.
- ③ 각 참여회사는 은행이 대리회사 및 다른 참여회사에게 해당 참여회사 또는 그의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 ④ 각 참여회사는 본조에 의한 대리회사에 대한 권한부여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30 일 전에 은행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참여회사가 대리회사에 대한 권한부여를 철회한 경우, 참여회사들은 대리회사의 역할을 대신할 후임 대리회사를 선임하고 위 통지 기간 만료 7 일 전까지 참여회사들 전원의 연명으로 이를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은행이 제 4 항에 의한 후임 대리회사의 선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후임 대리회사는 위 이의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대리회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 조 계좌의 변경

- ① 관리서비스 대상 계좌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참여회사의 가입 또는 탈퇴를 포함한다), 대리회사는 첨부 3 양식의 계좌통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를 원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30 영업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회사의 가입 또는 탈퇴의 경우에는 참여회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첨부 3-1 양식의 참여회사 (가입, 탈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제 1 항의 내용을 승인하는 경우 대리회사에게 그 승인의 의사를 통지한다.
- ③ 본조에 의한 계좌변경은 은행과 대리회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합의일이 없는 경우 은행이 승인 의사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 일이 되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이 약정상 관리서비스에 참여하는 개별 참여회사의 의무는 대리회사 변경, 다른 참여회사의 계좌의 추가 또는 삭제, 다른 참여회사의 가입 또는 탈퇴 등에 관계없이 유효하고, 그러한 변경, 추가, 삭제, 가입 또는 탈퇴 등을 이유로 약화되거나, 포기, 수정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 6 조 이자계산

- ① 자계좌와 모계좌 사이의 자금이체와 관련하여, 계좌간 이체 자금이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리회사는 은행에 첨부 4 양식에 의한 이자계산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의한 이자계산 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은행은 매월 []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 일 이자를 정산하기 위한 자금이체를 실행한다.
- ③ 은행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참여회사들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이자계산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참여회사들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본조에 의한 이자계산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로부터 은행을 면책시키기로 한다.

제 7 조 수수료

- ① 참여회사들은 연대하여 은행에게 다음과 같이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초기 관리서비스 개설 수수료 : 통화그룹별 금 _____ 원

월별 유지 수수료 : 계좌별 금 _____ 원

- ② 은행은 대리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제 1 항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관리서비스의 해지 및 중지

- ① 이 약정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참여회사들에 대하여는 대리회사)에게 해지일로부터 30 일 전에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회사에게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이 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서비스 관련 법령, 감독당국의 규정이나 지침 또는 관리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준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어느 참여회사가 이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어느 참여회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4. 제 4 조 제 4 항에 의한 후임 대리회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은행이 후임 대리회사의 선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제 1 항은 및 제 2 항은 은행의 참여회사에 대한 당좌대월 취소 또는 상환 요구권, 은행의 채권과 관리서비스 대상 계좌의 예금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이 약정상 의무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보류된다.
- ⑤ 출금할 계좌에 관리서비스에 따른 이체에 필요한 잔고가 없거나 그 신용한도가 부족한 경우, 은행은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의무가 없다. 은행이 어떤 이유로든 잔고나 신용한도가 부족한 계좌로부터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은행은 해당 이체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이자 포함)를 역이체하거나 역이체에 의해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소유한 참여회사에게 해당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세 금

- ① 참여회사는 관리서비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규 및 세제, 회계 상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은행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약정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이 약정의 당사자 또는 어떤 계좌에 대하여 세금, 수수료 또는 부담금 등이 부과된 경우, 은행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금, 수수료 기타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할 수 있고, 해당 참여회사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 ③ 본조는 이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 10 조 상 계 및 환 전

- ① 각 참여회사는 이 약정의 체결일로부터 탈퇴하는 날까지 그 명의의 관리서비스 대상 계좌 잔액의 한도 내에서 은행에 대한 다른 참여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며, 은행은 어느 참여회사에 대한 은행의 채권과 다른 참여회사의 관리서비스 대상 계좌의 예금을 상계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계좌간 목표잔액 관리를 위하여 각 계좌의 여유자금 잔액 또는 신용한도 잔액을 필요한 통화로 환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 환율은 환전당시의 해당 통화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매율]로 한다.

제 11 조 진 술 및 보 증

이 약정 기간 중 참여회사들은 은행에 대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참여회사들은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참여회사들은 이 약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수행할 능력과 권한이 있다.
3. 참여회사들은 이 약정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회사 내의 모든 절차를 거쳤고, 이 약정은 합법적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고 유효하며 참여회사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4. 회사는 이 약정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법에 의해 요구되는 인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5. 참여회사들은 관련 계좌의 잔액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잔액을 관리서비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6. 참여회사들은 관련 계좌에 대한 권리나 이익에 대하여 은행 이외의 제 3 자에게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7. 참여회사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참여회사들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거나 이에 관한 신청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관재인, 법정관리인, 청산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을 위한 신청이 제출된 바도 없다.

제 12 조 협약

참여회사들은 이 약정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참여회사들은 이 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이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일체의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한다.
2. 참여회사들은 계좌에 대한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 면책

본 관리서비스에 관한 은행의 면책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20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4 조 기타

- ① 이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법률, 규칙, 감독당국의 지침(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법원의 명령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경우, 은행은 이 약정을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나 지시에 응할 의무가 없다.
- ② 이 약정은 각 계좌에 적용되는 계좌별 계약조건을 보완하며,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은행이 가지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이 약정과 계좌별 계약조건들 사이에 내용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이 약정이 우선한다.
- ③ 이 약정의 어느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효력을 유지한다.

- ④ 이 약정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약정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은행은 관리서비스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그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게 이 약정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

제 15 조 준거법

이 약정 및 관리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제 16 조 재판관할

계약 당사자들은 이 약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의 1 심 관할법원을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 또는 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지정한다.

제 17 조 부분

이 약정은 팩스를 통해 다수의 부분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동일한 하나의 계약을 구성한다.

제 18 조 통지

- ① 통지 기타 의견교환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통지가, (1) 직접 전달된 경우에는 전달된 때에, (2) 우편 발송의 경우에는 이 약정에 명시된 해당 주소지(또는 서면으로 통지된 기타 주소지)로 발송된 날부터 7 일 후에, (3) 팩스 전송의 경우에는 전송 이후 발송인이 수령 확인서를 수령인으로부터 수령한 때에 각각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 ② 영업 시간 외에 수령된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수령인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 19 조 효력발생

- ① 참여회사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이 약정서 부분을 은행에 전달함으로써 이 약정의 조건을 승락하고, 은행은 참여회사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부분을 수령한 날에 해당 일자를 기입한다.
- ② 이 약정은 은행이 참여회사들로부터 이 약정서 부분을 수령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특약사항

본 인 : (인)

(인)

(인)

(인)

--

본인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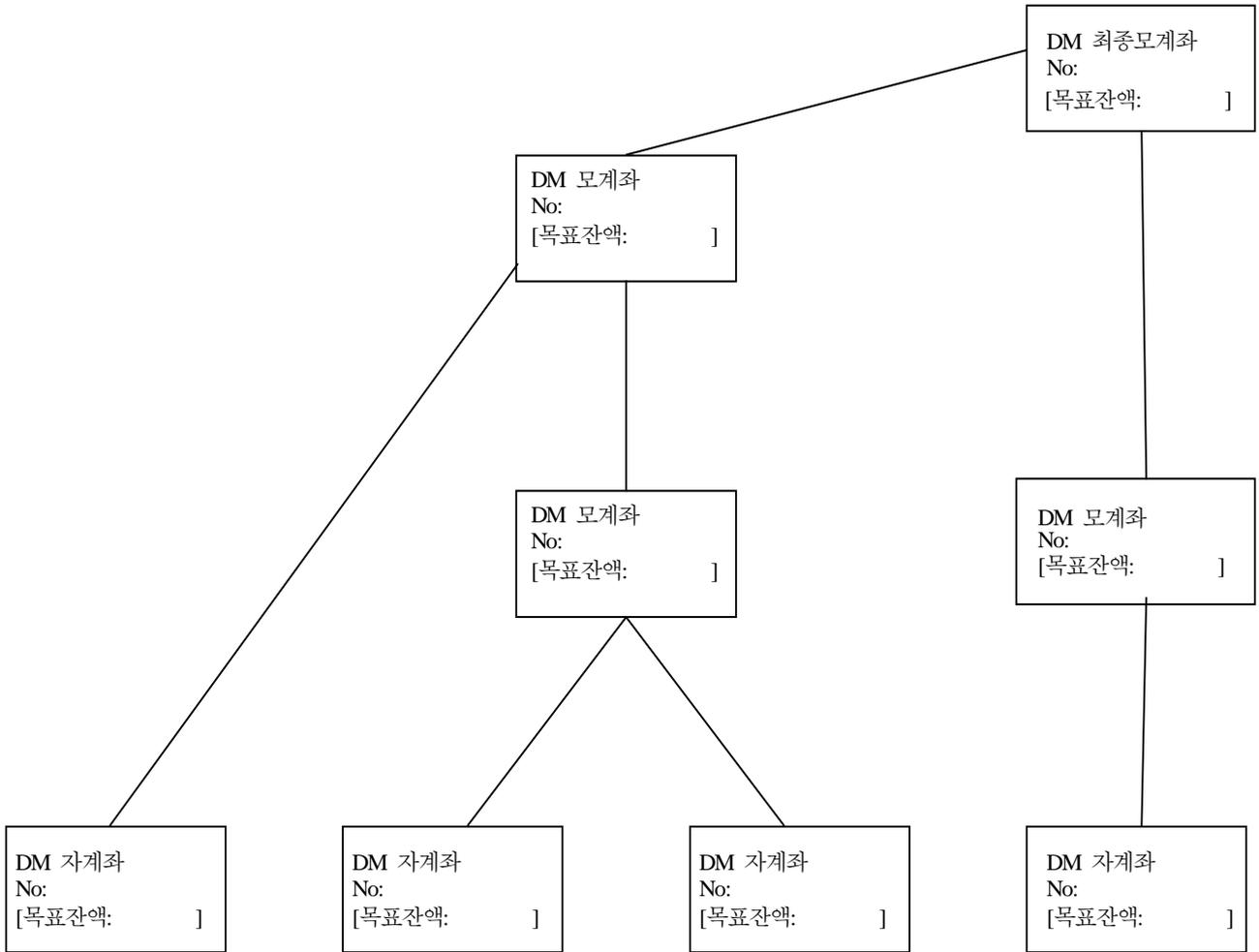
(인)

(인)

(인)

[첨부 1]

계좌구조도



[첨부 3]

계좌통지

수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

발신: [대리회사명] (이하 "회사")

제목: []년 []월 []일 체결된 계좌간 목표잔액 관리약정서(복수법인용)(수정, 보완된 내용을 포함함, 이하 “관리계약”) 관련.

1. 본 통지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관리계약에서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2. 별첨 계좌지정표에 기재된 계좌(들)를 (관리계약을 위한 계좌(또는 계좌들)로 추가 / 관리계약의 계좌에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통지에 의한 계좌변경은 []년 []월 []일 또는 (귀행이 위 일자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귀행이 본 통지에 따른 계좌변경을 승인하는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 일이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년 []월 []일

[대리회사명]

대표이사 [] (인)

별첨: 계좌지정표

[첨부 3-1]

참여회사 (가입, 탈퇴) 동의서

수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

제목: []년 []월 []일 체결된 계좌간 목표잔액 관리약정서(복수법인용)(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포함함, 이하 “관리계약”) 관련.

1. [참여회사 이름](이하 “회사”)는 관리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회사는 관리계약의 (참여회사로 참여 / 참여회사에서 탈퇴)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인)

위 (가입, 탈퇴)에 동의함.

[회사명]

대표이사 [] (인)

[회사명]

대표이사 [] (인)

[회사명]

대표이사 [] (인)

[회사명]

대표이사 [] (인)

[회사명]

대표이사 [] (인)

[회사명]

대표이사 [] (인)

[회사명]

대표이사 [] (인)

[첨부 4]

이자계산 요청서

수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

발신: [대리회사명] (이하 "회사")

제목: []년 []월 []일 체결된 계좌간 목표잔액 관리약정서(복수법인용)(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포함함, 이하 “관리계약”) 관련.

대리회사는 관리계약에 따라 귀행이 관리하고 있는 참여회사들의 계좌간에 발생한 이자를 다음 이자율에 따라 계산해줄 것을 귀행에 요청합니다.

모계좌(계좌번호:)와 다음의 자계좌에 적용될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번호	모계좌로 이체된 자금에 대한 적용금리	자계좌로 이체된 자금에 대한 적용금리

참여회사들은, 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이 요청에 의한 이자의 계산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누락 또는 계좌간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귀행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회사들은, 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이 요청에 의한 이자의 계산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누락 또는 계좌간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로부터 귀행을 면책시킬 것입니다.

[]년 []월 []일

[대리회사명]

대표이사 [] (인)